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」 제13-1판 수정사항

❍ **(수정사항)** 매뉴얼 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 4.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적용 과정에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결과 시기를 재검사 필요시기로 받아들여 불필요한 검사 증가와 양성 확인 시 관리 부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, 기존 「코로나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」 제13-1판('22.8.12.)에 제시된 재검출 사례 정의 적용

쪽수	기 안내사항('22.12.28.)	수정사항 ※ 코로나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3-1판 '22.8.12. 안내사항
p.42	**4.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** **가. 사례정의** ○ **(재검출)**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○ **(단순 재검출)**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재검출된 경우 ○ **(재감염 추정)**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○ **(재감염 확정)** 재감염 추정사례 중 1,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	**4.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** **가. 사례정의** ○ **(재검출)**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○ **(단순 재검출)**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,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, 임상증상 없는 경우 ○ **(재감염 추정)**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▶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▶ 최초 확진일 이후 45-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(또는 해외여행력)이 있는 경우 ○ **(재감염 확정)** 재감염 추정사례 중 1,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